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안)

의안 번호	96-3
----------	------

제출년월일 : '95. 2.

제 출 자 : 달서구청장
(총 무 과)

1. 제안이유

- 공직사회의 도덕성·윤리성의 고양을 위하여 경로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공무원복무규정중개정령(대통령령제14825호, '95. 12. 14)

3. 주요골자

-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호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확대 조정(안 제18조)
- 공무원 건강진단을 할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도록 함(안 제23조제6항)
-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3항 내용중 “정치적 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명시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를 차단(안 제27조).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고, 동조 제1항중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로 하며, 동조 제2항중 "당직근무자"를 "당직 및 비상근무자"로,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3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당직근무"를 "당직 및 비상근무"로 하여 이를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에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 전단중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근무시간"을 "근무시간등"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의 단서중 "토요일에는"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근무시간의 변경"을 "근무시간등의 변경"으로 하고, 동조중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 속 기 간	연 가 일 수
3월이상 6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②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의 제목 "연가일수에의 산입"을 "연가일수에서의 공제"로 하고, 동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지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21조제1항중 "2월"을 "60일"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2항 중 "6월"을 "180일"로 한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제22조제1호 및 제3항중 "참가하려 할 때"를 각각 "참가할 때"로 하고, 동조 제5호를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제23조제1항중 "휴가"를 "경조사휴가"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휴가"를 "출산휴가"로 하며, 동조 제3항중 "생리휴가"를 "여성보건휴가"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휴가"를 "수업휴가"로 하며, 동조 제5항중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하고, 동조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제23조제6항중 "휴가"를 "승선휴가"로 하고, 동조 제7항중 "휴가"를 "퇴직준비휴가"로 하여 이를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6조제1항중 “법 제56조의 규정”을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으로 한다.

제27조의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2. 특정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7조(당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u>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u>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u>당직근무자</u>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u>당직근무</u>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u>당직근무</u>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0조(파견근무) ① ~ ② (생략)</p> <p>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u>재외공무원복무규정</u>을 준용한다.</p>	<p>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p> <p>.....</p> <p>.....</p> <p>..... <u>당직근무자</u>는 모든 사고를 방지.....</p> <p>.....</p> <p>.....</p> <p>② <u>소속기관의 장</u>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u>당직 및 비상근무자</u>.....</p> <p>.....<u>당직 및 비상근무</u>.....</p> <p>.....</p> <p>④ <u>당직 및 비상근무</u>.....</p> <p>.....</p> <p>제10조(파견근무)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p> <p>.....</p> <p>.....</p> <p>.....<u>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u>.....</p> <p>.....</p>

현행	개정안
----	-----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 2 장 근무시간

제13조(근무시간) ① (생략)
 ② 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4조(근무시간의 변경) 구청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8 일
2년이상 3년미만	11 일
3년이상 4년미만	14 일
4년이상 5년미만	17 일
5년이상	20 일

.....

제 2 장 근무시간등

제13조(근무시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근속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일
6월이상 1년미만	7 일
1년이상 2년미만	10 일
2년이상 3년미만	13 일
3년이상 4년미만	16 일
4년이상 5년미만	19 일
5년이상 6년미만	22 일
6년이상	23 일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는 없을 경우에는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으로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20조 (연가일수에의 산입) ① 결근일수, 휴직일수, 직위해제일수 및 정직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 산입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②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p> <p>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p> <p>제20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휴직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p> <p>.....</p> <p>.....</p> <p>.....</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신설></p> <p>1. ~ 2. (생략)</p> <p>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p> <p>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p> <p>2. (생략)</p> <p>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p> <p>4.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1조(병가) ①60일.....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180일.....</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2조(공가) 1. 참가할 때 2. (현행과 같음) 3. 참가할 때 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5. <u>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6. <u>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 시험에 응시할 때</u></p>
<p>5. (생략)</p> <p>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u>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은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의 <u>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마다 1일의 <u>생리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u>휴가</u>를 얻을 수 있다.</p> <p>⑤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u>특별휴가</u>를 허가할 수 있다.</p>	<p>7. (현행과 같음)</p> <p>제23조(특별휴가) ① <u>경조사휴가</u></p> <p>② <u>출산휴가</u></p> <p>③ <u>여성보건휴가</u></p> <p>④ <u>출석휴가</u></p> <p>⑤ <u>포상휴가</u></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u></p>

현행	개정안
	<p>3. <u>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u></p> <p>② <u>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u> 2. <u>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u> 3. <u>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 간행물에 게재하는 것</u> 4. <u>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 착용·착용 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u>